

광주지방법원 2024. 12. 5 선고 2024가합543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

피고 1. 주식회사 A

2. B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24. 11. 7.

판결 선고 2024. 12. 5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737,859,012원 및 그중 494,444,239원에 대하여는 2023. 11. 20.부터, 215,795,124원에 대하여는 2023. 12. 5.부터, 27,598,132원에 대하여는 2023. 12. 27.부터 각 2024. 11. 8.까지는 연 8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1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들 사이에 2023. 8. 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3. 8. 17. 접수 제1482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)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3. 자백간주 판결(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)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

재판장판사정영호

판사노창현

판사김아란

별지